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장 관리운영 지침

제정 2022. 1. 14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장의 관리·운영 및 대관 등 도민에게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교육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육장”이라 함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교육장과 그 밖의 부수장비를 말한다.
2. “대관”이라 함은 제1호의 교육장과 그 밖의 부수장비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라 함은 제5조에 따라 대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업무)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교육장의 관리·운영
2.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
3. 그 밖에 교육장의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

제4조(대관범위) 교육장의 대관범위는 전라남도민을 위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·강좌·교류장소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대관승인) ① 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교육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 시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이용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(청소시간 포함)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관승인의 변경) ① 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 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관일로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변경신청서 접수 시 즉시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(대관승인의 제한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
2. 시설 훼손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정치·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
4. 행사,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
5. 제8조에 따른 대관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
6. 그 밖에 원장이 교육장 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

제8조(대관승인의 취소 등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
2. 이 지침의 지시를 위반할 때
3.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
5.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

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관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9조(대관시간) 교육장의 대관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승인할 경우 야간 및 주말에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자의 준수사항 등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원상복구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④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제11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장 등 또는 설비를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,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 시가에 따른다.

제12조(사용료) 교육장 대관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교육장 사용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대관승인번호

신청인	기관·단체명			
	주 소			
	대 표 자 명		담 당 자 명	
	전 화 번 호		팩 스 번 호	
	이 동 전 화		E - M a i l	

행사부분	행 사 명		참여인원	명
	행사내용			

대관사항	일 자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까지 (일간 / 회)
	일 시	시 분 ~ 시 분 까지 (시 분간) ※ 준비시간 포함 작성하여 주십시오.

(*) 개인정보 활용 동의

교육장 대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/이용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공정보	이용목적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	교육장대관정보 제공, 기관교육, 행사, 홍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

①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/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② 민원인은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. 다만 동의 거부시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.

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장 사용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

※ 사용의 제한(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장 관리 운영 지침 제7조)

①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설 훼손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③ 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④ 행사,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정 등
⑤ 대관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⑥ 그 밖에 교육장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교육장 사용(변경 · 취소)신 청 서

신청인	대관승인번호	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- 제 호		
	단 체 명		대표자 성명	(인)
	담 당 자		전화번호	TEL : - -
	주 소			
행 사 명			장소	
행사일자		20 년 월 일 시 분 ~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		
사 유 (상 세 기 재)				

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귀 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승인한 교육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(일정변경□, 내용변경□, 취소□)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